

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0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, 관계 법령과의 통일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법률(지방재정법)에 위임 없는 규정 삭제(안 제21조제4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5월 8일 ~ 5월 23일(15일간)

나. 의견 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예산담당관

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기획예산담당관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기획예산담당관 김정기
	팀장 직위·성명	예산팀장 조남준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유진 (790-5680)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지방재정법

제32조의6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2.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■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제21조(실적보고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.

1.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
2.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
3.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**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 (삭제)**